



OECD제국의 중앙과 지방간 과세권 배분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영훈

I. 서론

전 세계적 금융위기에 기인한 경기침체의 여파로 올해는 내국세 세입결손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는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워지는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 대책 또한 여러 측면에서 마련되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어 정부는 올해 3월 총 28.9조원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그중 세입결손보전을 위해 11.2조원을 배정하였고 이중 교부세 감액분으로 4.5조원을 보완하였다. 또한 지방채 추가인수를 통해 지방재정 지원을 0.8조원 보강하였으며, 지역교육 재정지원을 위해 초과 징수된 교육세 627억원을 조기정산하고, 추경과 별도로 2008년 세계잉여금 중 2,947억원을 교부세로 조기 정산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지역개발세의 신세원 발굴 등 선택적 과세권 도입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확대가 지방세제의 정책현황이 되고 있다. 또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신설에 대해서도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오랜기간 논의가 정리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사실 지난 참여정부 기간 동안에는 지방정부 전체로서의 지방재정지출은 매우 큰 폭으로 그리고 급격히 증가하였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기간 중 GDP 증가율과 지방정부 세출증가율을 대비해 보면 GDP 증가율의 1.58배에 달하고 지방교육재정까지도 포함할 경우 1.71배에 달한다. 이는 그 이전기간으로 1991년부터 2001년까지의

10년 기간의 평균인 0.9배와 0.88배에 비교해 볼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지방정부 재정지출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¹⁾.

그러나 그 질적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특기할 만한 점들이 관찰된다. 즉, 늘어난 지방정부재정의 세출을 어떠한 조달원(source)으로 부터 마련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세입 중 중심이 되어야 할 지방세보다는 중앙으로부터의 이전재원 확대를 통해 지방 재정지출이 급격히 증대되어 왔음이 특징적인 사실로 발견된다.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자주세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가 확충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조성하여 마련한 재원을 지방정부로 옮기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어 오히려 지방정부의 재정권한은 축소되어 전반적으로 재정자율성은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자주재원이라고 분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도 자율적인 과세권(taxing power)을 발휘하는 정도는 오히려 제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본고는 OECD회원국들을 대상으로 2004년을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관계, 그리고 지방정부 과세권(taxing power)의 자주성이 어떻게 다양하게 분포하는지를 국제비교하고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먼저 지방정부의 일반적 세입원천(source)을 지방세, (중앙과 지방간) 공유세, 그리고 이전재원으로 크게 세가지로 분류한 후 이 세가지 유형별 세입구조가 회원국들간에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제Ⅲ장에서는 본 논문의 핵심인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또는 지방세자주권을 일정기준 하에서 국가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후 이에 근거하여 OECD회원국들에서의 지방과세권 현황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이상에서의 논의에 기초하여 OECD국가들에서의 일반적 동향을 정리한 후 우리나라에서의 지방세과세자주권의 추이와 그 내용들,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 등을 정리해 본다.

Ⅱ. OECD 회원국들의 지방세 세입구조 및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

1. 지방정부 세입구조의 국제비교

〈표 1〉은 OECD회원국들의 지방정부 세입구조를 그 구성요소들별로 분류하여 상대적 비중을 국가간 비교한 표이다. 대체로 각국 지방정부들의 세입은 (1) 자체 지방세

1) 김현아(2008)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GDP 증가율대비 지방정부 세출증가율로 정의되는 세출탄력성은 약 1.58이며 지방교육재정을 포함할 경우 1.71에 달해 1991년부터 2001년까지의 이전 10년 기간 평균인 0.9 및 0.88과 비교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속도를 기간별로 대비하여 보고함.

세수(자주재원), (2) (중앙정부와의) 공유세원(공동세 등), (3) (정부간) 이전재원 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물론 사용료와 같은 세외수입과 지방채도 중요한 세입항목이지만 본 국제간 비교연구시에는 제외하기로 한다. <표 1>이 제시하는 바는 2002년 기준으로 20개 회원국들을 단순 산술평균할 때, 대략 지방세가 60% 나머지 40%를 정부간 이전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율적 성격의 지방세가 38%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았고, 특정보조금이 22%를 차지하여 지방정부 권한 밖에 속하는 지출이 1/5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일반보조금은 19%, 그리고 세원공유형 지방세는 16%를 차지하였다. 세원공유형 지방세는 특히 연방제 국가형태를 헌법에 규정한 나라들에서 연방정부와 주 및 지방정부간 공동세라는 형태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세원공유형 지방세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에서는 이전재원의 비중이 적은 경향을 보여, 양자간의 일종의 재원대체성(fiscal substitutability)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나라들간의 구성비율 차이는 매우 현격하게 나타나서, 캐나다 및 스위스의 주정부들은 자율적 지방세가 큰 비중을 차지했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독일의 주정부 및 오스트리아와 체코의 지방정부들에서는 공동세가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리스 멕시코 네덜란드에서는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표 1〉 OECD회원국의 지방정부 세입 구성(2002)

(단위: 지방세입 대비 %)

국가	자율적 지방세			세원공유형 지방세				기타 지방세	보조금		계
	지방의 세율 및 감면 권한	지방의 세율 권한	지방의 감면 권한	지방 결정	지방 동의	공동 결정	중앙 결정		특정	일반	
오스트레일리아 주 지방	41.1	-	-	-	34.4	-	-	-	21.9	2.7	100.0
	80.6	-	-	-	-	-	-	-	3.1	16.2	100.0
오스트리아 주 지방	3.7	-	-	-	43.5	-	-	5.5	37.4	10.0	100.0
	2.3	4.5	-	-	55.4	-	-	21.2	14.3	2.3	100.0
벨기에 주 지방	57.1	-	-	-	32.4	-	-	-	9.7	0.8	100.0
	7.5	65.0	-	-	-	-	-	2.7	23.8	0.9	100.0
캐나다 주 지방 ¹⁾	76.0	-	-	-	5.5	-	-	-	3.0	15.5	100.0
	0.9	47.7	-	-	-	-	-	1.3	48.0	2.2	100.0
체코 지방	3.2	2.4	-	-	-	51.8	-	0.9	41.7	-	100.0

OECD제국의 중앙과 지방간 과세권 배분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국가	자율적 지방세			세원공유형 지방세				기타 지방세	보조금		계
	지방의 세율 및 감면 권한	지방의 세율 권한	지방의 감면 권한	지방 결정	지방 동의	공동 결정	중앙 결정		특정	일반	
덴마크 지방	-	67.9	-	-	-	2.2	-	4.8	12.5	12.6	100.0
핀란드 지방	-	60.4	-	-	-	-	6.7	0.1	3.4	29.4	100.0
프랑스 지방	39.3	4.6	5.0	-	-	-	-	5.6	5.7	39.8	100.0
독일 주 지방	-	1.9	-	-	68.2	-	-	8.9	21.0	-	100.0
	8.7	16.7	-	-	23.7	-	-	0.6	50.3	-	100.0
그리스 지방	-	11.6	-	6.3	-	-	-	-	82.1	-	100.0
이탈리아 주 지방	-	28.4	-	-	11.4	8.5	-	-	14.8	36.9	100.0
	12.1	22.6	-	-	-	5.9	-	4.2	41.7	13.5	100.0
한국 지방	-	24.9	-	-	-	-	-	12.8	18.0	44.3	100.0
멕시코 주 ³⁾ 지방	5.0	-	-	-	-	-	-	-	54.4	40.6	100.0
	-	-	-	-	-	-	-	-	-	-	100.0
네덜란드 지방	-	11.8	-	-	-	-	-	0.1	61.7	26.5	100.0
노르웨이 지방	1.6	-	45.3	-	-	-	-	-	24.2	29.0	100.0
폴란드 지방	-	11.7	-	-	-	38.6	-	0.2	17.9	31.6	100.0
포르투갈 지방	-	21.2	-	-	-	8.9	-	18.1	5.7	46.0	100.0
스페인 주 지방	32.6	0.1	-	-	23.3	-	-	0.0	7.0	37.1	100.0
	16.1	30.4	-	-	12.7	-	-	0.0	13.1	27.8	100.0
스웨덴 ²⁾ 지방	-	74.0	-	-	-	-	-	-	7.5	18.5	100.0
스위스 주 지방	57.4	-	-	-	6.1	-	-	-	28.0	8.5	100.0
	2.0	66.9	-	-	-	-	-	-	25.2	5.9	100.0
산술평균 주 지방	30.3	3.4	-	-	25.0	0.9	-	1.6	21.9	16.9	100.0
	9.2	28.6	2.6	0.3	4.8	5.6	0.4	3.8	26.3	18.2	100.0

주: 1) 과세자주권을 갖은 퀘벡주의 경우 지방에 포함.

2) 2004년 수치

3) 지방정부로의 보조금 포함한 수치.

자료: National sources and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4, 2005 Edition.



2. 이전재원 국제비교

〈표 2〉는 OECD회원국들의 이전재원을 구성하는 보조금형태별로 구분하여 총 이전재원 금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구성비를 나타낸 표이다. 중앙정부의 하위정부에 대한 이전재원은 제일 먼저 특정보조금(Earmarked grant)과 일반보조금(Non-earmarked grant)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교부받은 하급지방정부가 교부하는 상급정부가 지정한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후자는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보조금의 양자간의 구분은 지방정부의 재정자주성을 판단하는 척도로 사용한다. 또 다른 구분방법으로 법정보조금과 재량(임의)적 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중앙과 지방간 배분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이다. 또한 매칭보조금이란 중앙이 지방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지방정부가 해당 용도로의 자체자금으로 지출을 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OECD회원국들의 경우 특정보조금과 일반보조금의 대략적인 비율은 60 대 40 정도이어서, 여전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예산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중앙정부의 특정보조금을 통한 영향력은 연방제국가에서의 주정부나 지역정부에 대해서가 하급지방정부에 대해서보다 더 큰 경향이 있다. 1/3정도의 보조금은 매칭보조금의 형태를 띠어서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제공비용을 낮추어주는 효과를 갖기도 하지만 중앙과 지방 양쪽에 모두 재정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특정보조금의 3/4정도는 법정보조금의 형태를 띠어서 지방정부입장에서는 세입안정성을 제공하지만 중앙정부에게는 급변하는 재정환경에서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된다.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일반과 비교할 때 특정보조금의 비율이 낮고 일반보조금의 비율이 70%를 넘는 매우 이례적인 배분비율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일반교부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반보조금으로서 69.9%를 차지하는 것으로 설명되며 여기에는 교육재정교부금도 포함된 비율이다.

〈표 2〉 OECD 회원국의 이전재원 유형별 구성비(2004)

(단위: %)

국가	유형	특정보조금						일반보조금			계
		법정배분				임의적		법정배분		임의배분	
		Matching		Non-Matching							
		경상	자본	경상	자본	경상	자본	일반보조금	포괄보조금		
한국		6.4				11.2	10.2	69.9		2.4	100.0
산술평균											
주		31.4	4.5	4.4	2.9	12.5	2.6	40.3	0.0	1.5	100.0
지방		22.9	3.8	5.7	1.9	9.2	9.9	38.3	6.5	1.5	100.0

자료: Blochliger(2006), p.25, Table 9. 중 정리

3. 지방세구조의 국제비교

대부분의 나라에서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소득과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일반소비세 등은 납세의무자·과세대상·과세구조 및 세율체계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주된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해당국의 지방정부 숫자 만큼이나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나라마다 지방세는 세제구조와 중앙 및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기능이 다르므로 국제비교를 하기 매우 어렵고 단순 평면비교를 통해 잘못된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먼저 〈표 3〉은 지방세를 OECD 조세분류체계에 따른 조세유형별로 구분한 후 지방정부의 과세권 유형별로 세분화한 표이다. 즉, 2004년 OECD회원국들의 지방세는 1000단위 소득과세가 41.7%, 4000단위 재산과세가 27.3%, 5000단위 소비과세가 21.4%를 차지하여 과세베이스가 재산 뿐만 아니라 소득과 소비를 베이스로 한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징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000단위 소득 및 자본이득과세는 지방세 중 세액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제한적 세율권한을 갖거나 공동세 형태로서 세수배분비율을 중앙과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자율성이 많이 제한되는 유형의 조세이다. 이는 5000단위 소비과세의 경우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지방소비세의 2/3 정도는 세율, 감면, 세수배분비율 등을 결정하는데 중앙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난다.

둘째, 4000단위 지방재산세는 이와 대조적으로 지방정부가 세율 및 감면권한에서

우위를 갖는 과세자주권이 높은 유형의 지방세이다. 특히 4100단위인 ‘부동산에 대한 보유과세’는 거의 전부 지방이 세율 및 감면권한 행사에 있어서 높은 자율성이 인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평균적 OECD국가의 조세유형별 지방정부 과세권 현황 (2004년)

	세율 및 감면 권한	세율권한		감면 권한	세원공유유형				중앙의 세율 및 감면 결정	기타	계
		전면적	제한적		지방 결정	지방 동의	공동 결정	중앙 결정			
1000 소득 및 자본이득과세	5.9	9.9	10.3	2.8	-	0.8	9.9	0.3	1.5	0.3	41.7
1100 개인소득세	5.2	9.3	8.1	2.8	-	0.8	8.2	-	1.1	-	35.5
1200 법인소득세	0.7	0.6	2.2	-	-	-	1.4	0.3	0.4	0.3	5.9
1300 기타	-	-	-	-	-	-	0.3	-	-	0.0	0.3
2000 사회보장기여금	0.1	-	-	-	-	-	-	-	0.0	0.1	0.3
2100 고용자	0.1	-	-	-	-	-	-	-	-	0.1	0.2
2200 고용주	-	-	-	-	-	-	-	-	-	0.0	0.0
2300 자영업	-	-	-	-	-	-	-	-	-	-	-
2400 기타	-	-	-	-	-	-	-	-	-	-	-
3000 급여세	2.4	-	0.2	-	-	-	-	-	0.7	-	3.3
4000 재산과세	11.5	5.5	9.0	0.3	0.2	-	0.2	-	0.8	-	27.3
4100 부동산보유세	6.4	5.3	6.4	-	-	-	0.0	-	0.5	-	18.6
4200 순부유세	0.4	-	1.1	-	-	-	-	-	0.0	-	1.5
4300 상속세·증여세	0.3	-	0.0	-	-	-	0.0	-	0.1	-	0.4
4400 (자산)거래세	2.5	0.0	1.3	0.3	0.2	-	0.1	-	0.2	-	4.6
4500 수시적 재산과세	0.1	0.2	0.2	-	-	-	-	-	-	-	0.5
4600 기타	-	-	-	-	-	-	-	-	-	-	-
5000 소비과세	3.4	1.5	1.3	0.0	0.9	4.2	5.2	-	4.5	0.3	21.4
5100생산·판매·유통과세	2.2	0.1	0.2	0.0	0.9	2.8	5.0	-	3.4	0.3	14.9
5200 이용 및 서비스과세	1.2	1.5	1.2	-	-	-	0.1	-	1.1	-	5.1
5300 기타	-	-	-	-	-	-	-	-	-	0.0	0.0
6000 기타과세	2.1	0.1	1.4	-	-	-	0.4	-	1.2	0.6	5.9
6100 기업	0.9	0.1	1.4	-	-	-	-	-	0.0	0.2	2.7
6200 기타	1.2	-	-	-	-	-	0.4	-	1.1	-	2.8
계	25.5	17.1	22.3	3.0	1.1	5.0	15.6	0.3	8.7	1.4	100.0

주: 1) 계산에 포함된 국가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스랜드, 이태리,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이며, 국가별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23개국 단순산술평균임.

자료: National sources and OECD, Revenue Statistics 1995-2004, 2005 Edition.

III. OECD회원국들의 지방정부 과세권 배분 현황²⁾.

1. OECD회원국들간의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유형 분류와 현황

OECD는 1999년 회원국가들의 지방세제도 중 과세자주권의 정도와 양태를 국가간 비교하기 위해 일종의 표준적인 분류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³⁾.

연방국가 또는 단일국가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소득·소비·재산과세 유형별로 그 하위정부(Sub-Central Government, 이하 ‘SCG’ 라 칭함)들이 그 나라의 총조세수입(=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 등) 또는 지방정부 세입예산(=지방세+세외수입+이전재정+지방채 등) 대비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계산한 수치로는 지방세 과세자주권을 측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많은 OECD회원국들에서도 다단계 정부구조를 갖는 재정체계하에서 지방정부 재정의 문제는 끊임없이 정치적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정부의 세원으로 배정된 세목에 대해 해당 지방정부가 과연 얼마나 통제권한과 영향력을 갖는지를 각 나라별로 비교하기 위해 OECD 재정위원회는 크게 5개 분류, 세부적으로는 8개 분류체계를 마련하였다. 즉, 지방정부(SCG)가 세율과 감면을 모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유형 a), 세율 결정권만 갖는 경우(유형 b), 감면권한만 갖는 경우(유형 c), 중앙정부가 세율 및 과세표준을 모두 결정하는 경우(유형 e),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세원을 공유하는 제도(tax sharing arrangements)를 운영하는 경우(유형 d)의 다섯 가지이다. 이 중 마지막의 공동세제도는 다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지방정부가 세원배분비율 및 방식을 결정하는 경우(유형 d.1), 지방정부의 동의하에서만 세원배분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유형 d.2), 법률에 세원배분공식이 규정되어 있으나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유형 d.3), 매년 예산편성과정 중에 중앙정부가 세원배분을 결정하는 경우(유형 d.4)로 세분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지방세 과세권 유형별 구분을 기준으로 하여, <표 4>는 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지방세 과세권(taxing power) 행사가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권한 측면에서 분류한 현황이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지방정부가 지방세 과세시에 중앙정부와 관련하여 행사하는 과세 자율권의 정도가 점점 약해지는 순서로 그 유형들을 분류하였다.

2) 본 절은 OECD(1999)와 Blochliger and King(2006)의 결과에 기초하여 재정리함.

3) OECD, Taxing Powers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 OECD Tax Policy Studies, 1999.

〈표 4〉 지방정부의 지방세 과세권 유형별 분류(2002)

국가	지방세입 / 총세입	지방세입대비 비율(%)										기타 ⁶⁾	계
		지방의 세율 및 감면 권한 ¹⁾	지방의 세율권한 ²⁾		지방의 감면 권한 ³⁾	세원공유유형 ⁴⁾				중앙의 세율 및 감면 결정 ⁵⁾			
			전면적	제한적		지방 결정	지방 동의	공동 결정	중앙 결정				
오스트레일리아 주 지방	31.4 28.4 3.0	54.4 100.0	- -	- -	- -	- -	45.6 -	- -	- -	- -	- -	100.0 100.0	
오스트리아 주 지방	18.4 8.8 9.6	7.0 2.7	- -	- 5.4	- -	- -	82.7 66.5	- -	- -	9.6 20.0	0.8 5.5	100.0 100.0	
벨기에 주 지방	27.8 22.8 5.0	63.8 10.0	- -	- 86.4	- -	- -	36.2 -	- -	- -	- 3.6	- -	100.0 100.0	
캐나다 주 지방	44.1 35.5 8.6	98.4 1.8	- 95.6	- -	- -	- -	1.6 -	- -	- -	- 2.3	- 0.3	100.0 100.0	
체코 지방	12.5 12.5	5.5	-	4.1	-	-	-	88.8	-	1.5	0.1	100.0	
덴마크 지방	35.6 35.6	-	86.0	4.7	-	-	-	2.9	-	6.4	-	100.0	
핀란드 지방	21.5 21.5	-	85.3	4.6	-	-	-	-	9.9	-	0.1	100.0	
프랑스 지방	10.0 10.0	72.1	-	8.5	9.1	-	-	-	-	3.6	6.6	100.0	
독일 주 지방	28.7 21.8 7.0	- 17.6	- -	2.4 33.6	- -	- -	86.3 47.6	- -	- -	12.2 1.1	- 0.2	100.0 100.0	
그리스 지방	0.9 0.9	-	-	64.6	-	35.4	-	-	-	-	-	100.0	
아이슬란드 지방	25.2 25.2	-	-	91.2	-	-	-	-	-	-	8.8	100.0	
이탈리아 주 지방	16.4 11.3 5.2	- 27.1	- -	58.8 50.4	- -	- -	23.7 -	17.6 13.1	- -	- 9.3	- -	100.0 100.0	
일본 지방	26.0 26.0	0.1	79.7	-	-	-	-	-	-	20.2	-	100.0	
한국 지방	18.9 18.9	-	-	64.3	-	-	-	-	-	35.7	-	100.0	
멕시코 주 지방	3.4 2.4 1.0	100.0 100.0	- -	- -	- -	- -	- -	- -	- -	- -	- -	100.0 100.0	

국가	지방세입 / 총세입	지방세입대비 비율(%)										
		지방의 세율 및 감면 권한 ¹⁾	지방의 세율권한 ²⁾		지방의 감면 권한 ³⁾	세원공유유형 ⁴⁾				중앙의 세율 및 감면 결정 ⁵⁾	기타 ⁶⁾	계
			전면적	제한적		지방 결정	지방 동의	공동 결정	중앙 결정			
네덜란드 지방	3.6											
	3.6	-	99.2	-	-	-	-	-	-	-	0.8	100.0
노르웨이 지방	12.9											
	12.9	3.3	-	96.7	-	-	-	-	-	-	-	100.0
폴란드 지방	17.5											
	17.5	-	-	23.2	-	-	-	76.4	-	0.4	-	100.0
포르투갈 지방	6.0											
	6.0	-	-	44.0	-	-	-	18.5	-	37.3	0.2	100.0
스페인 주	26.6											
	18.1	58.3	-	0.1	-	-	41.6	-	-	-	0.0	100.0
지방	8.5	27.2	-	51.4	-	-	21.4	-	-	-	0.0	100.0
	32.1											
스웨덴 지방	32.1	-	100.0	-	-	-	-	-	-	-	-	100.0
	43.1											
스위스 주	27.0	90.4	-	-	-	-	9.6	-	-	-	-	100.0
	16.2	2.9	-	97.1	-	-	-	-	-	-	-	100.0
터키 지방	6.5											
	6.5	-	-	-	-	-	-	-	-	-	100.0	100.0
영국 지방	4.5											
	4.5	-	-	100.0	-	-	-	-	-	-	-	100.0
산술평균 주	19.6	52.5	-	6.8	-	-	36.4	2.0	-	2.3	0.1	100.0
	12.4	15.4	22.7	34.6	0.4	1.5	5.6	8.3	0.4	5.9	5.1	100.0

- 주: 1) 유형 a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간섭없이 또는 중앙정부와 협의하에 세율 및 감면권한을 발휘함.
 2) 유형 b는 지방정부가 완전히 세율결정권한을 갖거나, 상급정부가 세율의 상하한을 규제하므로 제한적 결정권을 가짐.
 3) 유형 c는 지방정부가 감면권한을 가짐.
 4) 유형 d는 중앙과 지방정부간 세원을 공유하는 조세제도를 운영하며, (1)세수배분비율을 지방이 결정, (2) 지방정부의 동의하에서만 배분비율변경, (3) 세수배분비율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 (4) 매년 상급정부와의 예산심의과정 등을 통해 세수배분비율이 결정됨.
 5) 유형 e는 중앙정부가 지방세의 세율 및 과세표준을 결정함.
 6) 유형 f는 위의 어느경우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임.

자료: Blochliger and King(2006), Table 3.(p.12). 전재

각 나라들의 지방세에 해당하는 세목들의 수가 다르고 또 개별 지방세 세수의 절대적 및 상대적 규모도 다르므로 각 과세권 유형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세 세목별 세수액이 일종의 가중치로 적용되어 총 지방세 세입 대비 비율로 표시되었다.

2006년의 경우 OECD 1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총 조세수입 대비 지방세 세수의

비율은 단일형국가들의 경우 평균 17.3%였으며 연방제국가군의 경우 39.1%였다. 하위권에는 네덜란드(5.28%), 영국(5.66%), 뉴질랜드(5.58%), 포르투갈 및 헝가리(9.3%), 폴란드(18.9%)가 그리고 상위권에는 덴마크(34.5%), 스웨덴(36.1%), 스위스(54%)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이러한 수치는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지방세와 공동세 세목의 조세부담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지방정부가 얼마나 발언권을 갖는지를 분석해 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지방정부가 징수하여 사용하는 세원에 대한 과세자주권은 나라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10개국은 지방세의 세율과 과세표준에서 또는 공동세 배분결정시 동의과정에서 자주권을 발휘하고 있었던 데 반해 나머지 9개국은 자주권이 미약했다.

둘째, 지방세 세목에만 국한해서 보면 핀란드, 뉴질랜드, 스위스는 지방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율을 거의 제한 없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유형 a에 속하나, 대부분의 나라들은 세율 결정에 대해서만 자주권을 갖는 유형 b에 해당하였다.

셋째, 지방세 세수비중이 18.9%로 회원국 산술평균치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과세자주권의 유형별 분류에 따르면 유형 b 중 탄력세율 적용가능 세목을 모두 지방이 제한적인 세율결정권한을 갖는다고 분류할 경우 64.3%, 그리고 중앙정부가 세율과 감면을 모두 결정하는 유형 e의 비중이 35.7%로 유형 a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⁴⁾.

2. 재산과세의 지방세 과세자주권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적 OECD국가들과 달리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비중이 낮으므로 지방재산세만을 대상으로 전체 재산과세 중 국세 대 지방세의 비중을 중심으로 과세자주권을 살펴보자. <표 5>와 <표 6>은 OECD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연방제 및 단일형 국가군으로 나누어 재산과세(4000단위 조세분류)의 지방세원화(국세-지방세 세목구분 측면)의 정도를 비교해 본 표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중앙과 지

4) 이러한 결과는 2003년 이후 탄력세율을 인정하는 범위가 취득세와 등록세와 같이 세수비중이 높은 세목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유형 e와 유형 b간의 상대적 비중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제도적으로 탄력세율을 허용한 지방세 세목에서 징수한 세수전액을 포함시킴에 따라 유형 b 중 제한적 세율결정권한비율이 높게 계산되었음.

방간 구분이 국세냐 지방세이냐의 기준에 따른 구분이지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이전되어 어느 단계의 정부가 세수를 실제로 사용하느냐라는 세수사용주체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세로 징수하여 교부세나 양여금을 통해 지방정부에 보내져 지방정부 지출예산에 포함되는 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몇 가지 특징적인 사실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연방제 국가(federal country)의 중앙·지방정부간 재산과세 세수 비중(2006)

(단위: %)

국가	조세 구분	4000	4100	4200	4300	4400	4500	4600	총세수액
		재산 과세	부동산 보유세	(순) 부유세	상속세· 증여세	(자산) 거래세	수시적 재산과세	기타 정기적 재산과세	
호 주	중앙	0.05	-	-	-	0.10	-	-	68.99
	주	67.85	36.41	-	-	99.90	-	-	28.07
	지방	32.10	63.59	-	-	-	-	-	2.93
오스트리아	중앙	17.81	4.40	-	75.00	18.72	-	-	74.63
	주	5.03	6.19	-	13.64	2.62	-	-	12.03
	지방	77.15	89.41	-	11.36	78.66	-	-	13.33
벨 기 예	중앙	13.47	3.47	100.00	-	12.70	100.00	100.00	52.19
	주	69.70	1.10	-	100.00	87.30	-	-	39.49
	지방	16.83	95.43	-	-	-	-	-	8.31
캐 나 다	중앙	-	-	-	-	-	-	-	48.46
	주	20.09	8.98	100.00	-	88.12	25.60	-	42.27
	지방	79.91	91.02	-	-	11.88	74.40	-	9.27
독 일	중앙	-	-	-	-	-	-	-	50.30
	주	48.81	-	100.00	100.00	100.00	-	-	36.18
	지방	51.19	100.00	-	-	-	-	-	13.51
멕 시 코	중앙	-	-	-	-	-	-	-	96.22
	주	36.98	36.37	-	-	37.96	-	-	2.46
	지방	63.02	63.63	-	-	62.04	-	-	1.32
스 페 인	중앙	0.47	-	2.46	1.48	0.06	-	100.00	54.84
	주	69.71	-	89.91	95.71	97.28	-	-	32.44
	지방	29.81	100.00	7.63	2.81	2.66	100.00	-	12.72
미 국	중앙	6.84	-	-	85.27	-	-	-	55.85
	주	4.18	3.29	-	14.42	-	-	-	26.05
	지방	88.98	96.71	-	0.31	-	-	-	18.09
스 위 스	중앙	19.50	-	-	-	68.08	-	-	46.30
	주	48.97	25.52	58.49	88.23	25.85	-	-	32.29
	지방	31.54	74.48	41.51	11.77	6.08	-	-	21.41

주: 사회보장기여금은 계산에서 제외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7, 2008.

〈표 6〉 단일형 국가(unitary country)의 중앙·지방정부간 재산과세 세수 비중(2006)

(단위: %)

국가	조세 구분	4000							총세수액
		재산 과세	4100	4200	4300	4400	4500	4600	
			부동산 보유세	(순) 부유세	상속세· 증여세	(자산) 거래세	수시적 재산과세	기타 정기적 재산과세	
체 코	중앙	64.33	-	-	100.00	100.00	-	-	73.70
	지방	35.67	100.00	-	-	-	-	-	26.30
덴 마 크	중앙	40.16	-	-	100.00	100.00	52.94	-	65.54
	지방	59.84	100.00	-	-	-	47.06	-	34.46
핀 란 드	중앙	57.31	-	-	100.00	100.00	-	-	71.50
	지방	42.69	100.00	-	-	-	-	-	28.50
프 랑 스	중앙	24.70	1.87	100.00	100.00	23.70	-	-	76.89
	지방	75.30	98.13	-	-	76.30	-	-	23.11
그 리 스	중앙	84.16	-	-	100.00	98.47	-	100.00	98.67
	지방	15.84	100.00	100.00	-	1.53	-	-	1.33
형 가 리	중앙	33.27	-	-	48.90	-	48.91	-	90.66
	지방	66.73	100.00	-	51.10	-	51.09	-	9.34
아이슬란드	중앙	34.18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75.77
	지방	65.82	100.00	-	-	-	-	-	24.23
아 일 랜 드	중앙	76.48	-	-	100.00	100.00	-	-	97.57
	지방	23.52	100.00	-	-	-	-	-	2.43
이 태 리	중앙	56.43	-	100.00	89.36	94.43	75.71	55.17	77.92
	지방	43.57	100.00	-	10.64	5.57	24.29	44.83	22.08
일 본	중앙	21.07	0.01	-	100.00	71.52	-	-	59.72
	지방	78.93	99.99	-	-	28.48	-	-	40.28
한 국	중앙	30.09	22.93	-	100.00	24.27	100.00	-	76.97
	지방	69.91	77.07	-	-	75.73	-	-	23.03
룩셈부르크	중앙	96.21	-	100.00	100.00	93.46	-	-	93.96
	지방	3.79	100.00	-	-	6.54	-	-	6.04
네 덜 란 드	중앙	64.99	-	100.00	100.00	100.00	-	-	94.72
	지방	35.01	100.00	-	-	-	-	-	5.28
뉴 질 란 드	중앙	2.93	-	-	100.00	100.00	-	-	94.42
	지방	97.07	100.00	-	-	-	-	-	5.58
노 르 웨 이	중앙	55.53	32.08	43.24	100.00	100.00	-	-	87.37
	지방	44.47	67.92	56.76	-	-	-	-	12.63
폴 란 드	중앙	-	-	-	-	-	-	-	81.15
	지방	100.00	100.00	-	100.00	-	-	100.00	18.85
포 르 투 갈	중앙	2.71	-	-	75.00	5.64	-	-	90.71
	지방	97.29	100.00	-	25.00	94.36	-	-	9.29
슬 로 벡	중앙	3.30	1.09	-	100.00	100.00	-	-	81.20
	지방	96.70	98.91	-	-	-	-	-	18.80
스 웨 덴	중앙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	63.91
	지방	-	-	-	-	-	-	-	36.09
터 키	중앙	70.46	-	-	88.24	89.49	-	-	89.32
	지방	29.54	100.00	-	11.76	10.51	-	-	10.68
영 국	중앙	62.85	48.52	-	100.00	100.00	-	-	94.34
	지방	37.15	51.48	-	-	-	-	-	5.66

주: 사회보장기여금은 계산에서 제외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7, 2008.



대분류 4000단위 재산과세 중 4300단위 상속증여세와 4200단위 순부유세는 국세로서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는 부유세가 ‘소득세보완론적’ 개념으로 도입된 배경이라던가 상속증여세가 인에 대한 비정기적 저량과세라는 측면에서 개인소득과세와 모두 밀접하게 연계되어 과세된다는 특징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4100 중분류단위인 부동산보유세는 전술하였듯이 대부분 지방세로 과세되고, 4400단위 자산거래세는 중앙정부의 국세로 과세되는 것이 압도적이다. 부동산보유세의 경우 30개 회원국 중 예외는 중앙집권형(unitary) 국가중 스웨덴과 영국, 연방형(federal)국가 중 벨기에와 멕시코 뿐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방재산세(local property tax)라는 세목으로 지방정부의 주요세원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웨덴은 순부유세도 부과하면서도 국세인 부동산세('statlig fastighetsskatt')를 시가의 75%를 과표액으로 1%의 단일비례세율로 따라서 0.75% 정도의 실효세율⁵⁾로 부과하는 특이한 나라였다. 스웨덴의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펀드로 구성되는데, **총세수의 30% 이상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는데** 이 비율은 EU국가들 중 예외적으로 높은 편이다.

또한 영국은 지방재산세였던 레이트(rate)를 주거용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인 카운슬세(council tax)와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국세인 사업용레이트(uniform business rate, non-domesticated rate)로 이원화하는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이 세원을 공유하고 있다.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OECD회원국들에서의 총세수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지방정부(SCG)의 몫(share)을 국가간 비교해 볼 때 관찰되는 특징적 사실(stylized facts)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권화 정도는 국가간 매우 큰 차이를 보여서, 한 나라의 총 정부지출 중 지방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적게는 6% 미만에서부터 60% 이상까지, 그리고 총세입 중 지방정부에 귀속되는 비율은 3%에서 50%까지 매우 폭넓은 편차의 분포를 보인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지방정부의 재정 자주성(fiscal autonomy)은 그 나라의 중앙과 지방정부간 관계를 규정한 헌법상의 제도적 요인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단일형국가(unitary countries)내 지방정부들이 연방제국가(federal countries)의 지방 및 지역정부들 보다도 더 높은 지방세출비율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5) 매년 전수평가(general reassessment)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6년마다 한번씩 과표조정을 함으로써 실효세율은 이보다 훨씬 낮은 상황임.

둘째,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10년 기간 동안 지방정부의 세수 및 지출비율은 어떤 특정한 수치로 수렴하기 보다는 계속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방정부 지출 비율은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극소수의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정부 세입비율 및 과세권은 거의 안정적인 경향을 보인다. 세출측면에서 지방정부 지출비율이 커진 것은 이태리, 멕시코, 스페인에서 의료보건분야 및 초중고등학교 교육분야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이 증대되고, 캐나다에서 노동시장정책에서 지방의 역할이 증가한 데에도 일부 기인한다. 미국의 경우는 과거 연방정부가 지원하던 수많은 사업들을 주정부가 대신 떠맡게 된 요인이 작용했다. 한편 지방정부 과세권이 일본 및 프랑스의 경우 줄어드는 것이 관찰되는데, 이 나라들에서는 지방세가 정부간 이전재정(intergovernmental transfer)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대부분의 OECD회원국들에서 지방정부의 지출이 조세수입보다 커서 그 차액에 해당하는 재정적자 폭이 확대되는 경향에 있음이 관찰되었으며, 지방정부 업무범위에 비해 부족한 자원 부분을 충당할 대규모 이전재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성이 높은 나라들일 수록 재정적자규모가 큰 경향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의외로 중앙정부와 세원공유제도를 통한 배분비율이 높아 보다 분권화되어 있는 나라들, 예를 들어 캐나다,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에 보다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공동세 등 세원공유제도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 지방의 중앙에 대한 의존적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이상에서 언급한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간 세입 및 세출비율들은 한 나라의 지방정부가 실제 재정자주성을 얼마나 발휘하는지를 측정하는 척도로 부적절함이 밝혀졌다. 세입측면에서 지방정부가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그리고 감면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약조치들은 재정자주성을 훼손할 수 밖에 없음이 명백하다. 또한 세출측면에서도 상급정부가 하급 지방정부의 지출을 규제할 경우 하급지방정부의 재량성은 자율성을 침해받을 것이다. 몇몇나라들의 경우 교육이나 의료보건분야에서 중앙정부가 규제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지출권한만을 지방에 이전한 경우 이는 단순히 회계적 절차변경에 해당할 뿐이다. 더욱이 정부간 이전재원을 교부하는 조건들이 복잡다기할 경우 하급정부의 지출행태는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자주성을 제대로 측정하려면 보다 정교하게 고안된 지표들이 필요하게 된다.

우리는 제Ⅲ절에서 지방정부의 세목으로 배정된 세목에 대해 해당 지방정부가 과연 얼마나 권한과 영향력을 갖는지를 각 나라별로 비교한 OECD의 연구를 소개하였다. 지방정부의 과세권(taxing power)을 크게 5개 세부적으로 8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과

세자주권의 정도를 국가간 비교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⁶⁾. 유사한 분류기준을 활용해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지방세에서 탄력세율 등 세율결정에서 자주권을 발휘할 수 있는 세수의 비중이 적고 중앙정부가 세율과 과세표준을 모두 결정하는 방식인 유형 e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⁷⁾. 이러한 세입측면에서의 자율권을 세출분권이라고 표현하여 혹자⁸⁾는 ‘세출분권은 OECD국가 중 높은 편이나 세입분권은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세출분권과 세입분권간 괴리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이며, 괴리가 크면 클수록 지방재정에 대한 재정책임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2002년 이후 최근까지의 지방재정분권화 및 과세자주권 동향을 살펴보자. 2008년 말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의 개편으로 그 세수인 부동산교부세가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편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이 줄어들게 된 계기는 크게,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또는 위헌으로 판정받아 정부가 종부세법을 수동적으로 개정할 수밖에 없어서 세수가 줄어든 부분, 그리고 현재판결 수용사항은 아니지만 정부가 (개정)종부세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정한 종부세 개정으로 영향을 받은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종부세 도입 당시의 중앙정부는 특정지역에 보유세강화를 통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그리고 부동산보유가액별로 차별화된 부동산보유세를 만들기 위해 ‘국세로서의 보유세’를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가 세제를 결정하고 징수를 담당하지만 거두어들인 세수입은 전액 지방정부에게 이전하는 형태로 제도를 설계할 함으로써 세제개편에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하였다. 246개 시·군·자치구들은 기초자치단체 개별적으로는 세제개편으로 기존의 재산세·종토세 보유세체계에서 확보되었던 과세베이스가 훼손되는 지자체들도 상당수 존재하였기 때문에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전체 간 대립하는 양상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 간에도 이해가 상충되는 정책이슈였던 것이다.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종합부동산세 배분기준의 첫 번째 기준이 ‘기존보유세체계하에서의 부동산 세수는 최소한 보장한다’는 세수보전원칙이었다. 개편 후 향후 부동산보유세 과세베이스가 얼마나 늘어날 지는 부동산시장의 가격동향과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과표결정권 및 세율변경권 등에 달려 있었으므로 개별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취하였던 기초자치단체들도 세수보전이라는 약속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었다.

그러나 종합토지세라는 국세적 지방세인 토지세를 갖고 있으면서도 유지되었던 세

6) OECD(1999)
7) 노영훈(2007)
8) 이영희(2009)

원분리의 원칙이, 주택까지도 포함하여 더 확대된 과세베이스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 세원공유(tax sharing)체제로 바뀌는 것이 갖는 재정적 의미에 대해서 종부세 도입 및 개정과정에서 그다지 심도있게 논의되지 못했었다. 토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 세제적 보유세였던 종합토지세가 15년간의 시행경험 이후에도 지가안정이라는 목적도 토지소유구조개편이라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직시하였었다면 중앙정부의 정책세제를 지방세인 재산세나 종부세세수를 지방에 배분하는 부동산교부세와 연계시켜 ‘지방세의 자주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결과가 얼마나 지방재정운영에 악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가볍게 생각했었다는 판단이다. 전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방재산세(local property tax)를 주된 과세베이스로 확보하여 주고 있는 이유는, 이들 지방정부들이 관할구역내 소재 부동산이라는 자체 과세베이스에 대해서만큼은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하라는 취지이다. 결국 부동산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수요억제차원에서 보유세부담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국세보유세를 신설한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종부세 세수를 재원으로 한 부동산교부세를 신설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의존재원으로 교부하여 재정운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야기시킨 셈이 되었다.

참고문헌

- 김현아, “참여정부 재정분권 수준평가”, 업무회의 발표자료, 한국조세연구원, 2008. 10. 27.
- 이영희, 『세입·세출분권 괴리 축소를 위한 지방소득·지방소비세의 도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KRILA FOCUS, 2009. 4. 10.
- 노영훈, 『부동산시장과 부동산조세정책과제』, 연구보고서 07-09, 한국조세연구원, 2007. 12.
- 최병호·정종필, “재정분권화와 지역경제성장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재정분권화 지표의 개발과 실증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제6권 제2호, 한국지방재정학회, 2001. 12월.
- Blochliker, Hansjorg, and David King, "Fiscal Autonomy of sub-central governments," Department and Center for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OECD, 2006. 